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27 선고 2022가단50592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27.

## 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9. 10. 14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2,909,09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2,909,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조해근

별지